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2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9월 6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9.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의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검토시간을 보장하고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함

나.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발의(안 제19조의2조)
- 서류제출 요구(안 제3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의안 제출 기한을 기존의 회기 시작 ‘7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의안이 제출된 이후 회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검토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9조의2에서는 의안 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26조에서는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였고,
- 안 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의안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이 가진 정보만으로 심의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
----------	-----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유승용, 신흥식, 임헌호
김지연 의원(4인)

1. 제안이유

기존 회기 시작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회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이 제대로 제출된 이후에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자 개정함.

또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안의 제출·발의(안 제19조의2조)

나. 서류제출 요구(안 제39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9. 11. ~ 9.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본문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하고,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제40조 및 제41조로 하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늦어도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서류제출 요구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서류 제출 요구서

20 . . .

수 신 : 영등포구의회 의장

제 목 : 서류 제출 요구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1. 요구대상자 : 구 청 장
2. 요 구 서 : 별 칩

제출자 :

(서명·인)

서류 제출 요구서

의 원 명	○○○의원	소 속	○○○○위원회
요 구 일		제출기한	
제 출 서 류 명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 ② (생략)</p> <p>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 기시작 <u>7일</u>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생략)</p>	<p>제19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10일</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 원수) ① (생략)</p>	<p>제2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 원수)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 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위원회 가. ~ 라. (생략) 마. <u>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사. (생략)</p> <p>3. (생략)</p> <p>③·④ (생략)</p> <p><u><신설></u></p>	<p>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 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 라.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마.·바. (현행 바목 및 사목 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u>제39조(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 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늦어도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u></p> <p>③ <u>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서류제출 요구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39조</u> · <u>제40조</u> (생략)</p>	<p><u>제40조</u> · <u>제41조</u> (현행 제39조 및 제40조와 같음)</p>
<p><u>제41조</u> ~ <u>제47조</u> (생략)</p>	<p><u>제42조</u> ~ <u>제48조</u> (현행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와 같음)</p>